|  |  |  |
| --- | --- | --- |
|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 통지**  재세[2015]7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 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시키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보장법>, <장애인 취업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을 제정 및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국가세무국  중국장애인연합회  2015년 9월 9일  첨부: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장애인 취업보장금(이하 '보장금'으로 약칭)의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취업보장법>, <장애인 취업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장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기관, 단체, 기업, 사업조직과 민영비(非)기업체(이하 '근로자 사용업체'로 약칭)가 납부하는 자금이다.  **제3조** 보장금의 징수, 사용과 관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4조** 이 방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력장애, 정신장애 및 다중적 장애임이 표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증>(1~8급)을 소지한 자를 지칭한다.  **제5조** 보장금의 징수, 사용과 관리는 쟁정부서의 감독검사와 회계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징수 및 국고납입**  **제61조**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본 업체 재직 종업원 수의 1.5%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근로자 사용업체가 장애인을 재적 인원으로 채용하거나 법에 따라 취업적령기 장애인과 계약기간 1년 이상(1년 포함)의 근로계약(근무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사회보험비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수에 산입이 가능하다.  근로자 사용업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1~2급)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증>(1~3급)을 소지한 자를 1명 고용하는 경우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근로자 사용업체가 타지역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인수에 산입해야 한다.  **제81조**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장애인 고용인수와 규정비율에 해당되는 인수와의 차액으로 해당 업체의 재직 종업원 연평균급여를 곱한 금액을 보장금으로 납부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장금 연간 납부액 =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수 ×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 근로자 사용업체가 직전연도에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인수) ×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연평균급여.  근로자 사용업체의 재직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자 사용업체의 재적 인원 또는 법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이상(1년 포함)의 근로계약(근무계약)을 체결한 인원을 지칭한다. 계절적 고용은 연평균 고용인수로 환산해야 한다. 노무파견 방식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재직 종업원 수에 산입한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수와 규정 비율에 해당되는 인수의 차액은 공식에 따른 계산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정수(整數)가 아닐 수 있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연평균급여는 근로자 사용업체의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급여 총액을 직전연도 재직 종업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9조** 보장금은 근로자 사용업체 소재지의 지방세무국이 징수를 담당한다. 지방세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국가세무국이 징수를 담당한다.  관련 성·자치구·직할시에 보장금 징수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장금은 월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업체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장금 징수기관에 보장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본 업체의 재직 종업원 수,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수, 재직 종업원의 연평균급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11조** 보장금 징수기관은 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업체의 신고가 진실적이지 않거나 보장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징수기관은 신고를 독촉하고 보장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12조**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는 보장금 징수기관의 보장금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업체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에 본 업체의 직전연도 장애인 고용인수를 신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는 심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사용업체의 실제 장애인 고용인수를 확정하고 지체없이 보장금 징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보장금 징수기관은 보장금 징수 시 성급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영수증 또는 조세수입증표를 근로자 사용업체에게 발행해야 한다.  **제14조** 보장금은 지방 국고로 전액 납입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간의 보장금 배분비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와 장애인엽합회가 확정한다.  상세한 국고납입 방법은 성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세무기관이 보장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경우 재정부서·세무기관·인민은행·상업은행의 조세수입 징수 및 국고납입 전산망을 적극 이용하여 보장금을 징수하고 국고로 납입해야 한다.  **제16조** 공상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장애인 고용인수가 소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재직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소형박리기업의 보장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17조** 근로자 사용업체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가 규정한다.  근로자 사용업체가 신청하는 보장금 감면 최고한도 금액은 1년분의 보장금 부과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보장금 납부유예 최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비준받은 근로자 사용업체 명단은 연 1회씩 공고해야 한다. 공고내용에는 비준기관, 비준문건 번호, 비준한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보장금 징수기관은 보장금을 징수함에 있어 규정된 범위, 기준 및 기한 요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보장금이 지체없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보장금을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서는 아니되면 보장금의 징수대상, 범위와 기준을 무단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각 지는 근로자 사용업체의 소정 비율에 따른 장애인 고용 및 보장금 납부 상황 공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연합회는 매년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 사용업체 장애인 고용인수 목표치와 실제 고용인수 및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인수를 공표해야 한다.  보장금 징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근로자 사용업체의 보장금 납부 상황을 사회에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장 사용관리**  **제21조** 보장금은 지방 일반공공예산 총괄계획에 편입시켜 주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장애인 생활보장의 용도로 사용한다.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의 용도로 지출.  (2)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구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 제공 및 직업기능 경기대회(직업기능 육성활동 포함) 진행의 용도로 지출. 근로자 사용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매 및 개조 보조금과 지원 성격의 서비스 비용. 보조 성격의 취업기구에 지급하는 개설 및 운영 비용 보조금.  (3) 자영업, 자주창업, 탄력취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장소 임대 보조금, 착수자금 보조금, 시설·설비 구매 보조금 및 소액대출 금리 보조금.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하는 장애인의 사회보험비 보조금 및 근로자 사용업체 일자리 보조금. 재배·양식·수공업 및 기타 형식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4) 소정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근로자 사용업체와 장애인의 취업 면에서 실적이 뛰어난 업체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5)공익성 일자리 취직, 보조 성격의 취업, 탄력 취업하는 소득이 현지 최저임금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구조 보조금.  (6)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서가 비준한 장애인 취업촉진 및 빈곤장애인·중도장애인 생활보장 등 기타 지출.  **제22조** 지방 각 급 장애인연합회 산하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기구의 정상적인 경비 지출은 지방 동급 재정예산으로 총괄 배정한다.  **제23조** 각 지는 정부조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부조달 법률제도의 규정에 따라 요구에 부합되는 국영, 민영 등 다양한 유형의 취업서비스기구를 선택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재활, 취업서비스 및 원조 등 업무를 도급하도록 한다.  **제24조** 지방 각 급 장애인연합회, 재정부서는 매년마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장애인 생활보장에 사용된 보장금 지출상황을 사회에 공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5조** 업체와 개인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 성격의 요금 및 과태료 수입 수지 별도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잠정규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물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무단으로 보장금을 감면하거나 보장금 징수범위,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  (2) 상납해야 하는 보장금을 은폐하거나 직접 지출하는 행위.  (3) 상납해야 하는 보장금을 체류, 억류, 유용하는 행위.  (4) 보장금을 국고로 납입함에 있어 규정된 예산등급, 예산과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규정을 어기고 보장금을 사용하는 행위  (6)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26조** 근로자 사용업체가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 취업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장금 징수기관이 재정부서로 이송하여 재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납부를 명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금액을 보충납부함과 더불어 체납 시작일로부터 1일 경과될 때마다 5‰의 체납금을 부과한다. 체납금은 보장금의 예산 등급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1. 보장금 징수·사용 관리 관련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보장금 징수 및 사용 관리 업무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 등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2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재정부서는 세무부서, 장애인연합회와 회동하여 이 방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장애인연합회에 비안(備案)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세무총국, 중국장애인연합회와 회동하여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이 방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 관리 잠정규정> 발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재종자[1995]5호) 및 이 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关于印发《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  财税[2015]72号  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国家税务局、残疾人联合会：  　　为了规范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促进残疾人就业，保障残疾人权益，根据《残疾人保障法》、《残疾人就业条例》的规定，我们制定了《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中国残疾人联合会  　　2015年9月9日  附件：  **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残疾人就业保障金（以下简称保障金）征收使用管理，促进残疾人就业，根据《残疾人保障法》、《残疾人就业条例》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保障金是为保障残疾人权益，由未按规定安排残疾人就业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民办非企业单位（以下简称用人单位）缴纳的资金。  **第三条** 保障金的征收、使用和管理，适用本办法。  **第四条** 本办法所称残疾人，是指持有《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证》上注明属于视力残疾、听力残疾、言语残疾、肢体残疾、智力残疾、精神残疾和多重残疾的人员，或者持有《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1至8级）的人员。  **第五条** 保障金的征收、使用和管理应当接受财政部门的监督检查和审计机关的审计监督。  **第二章 征收缴库**  **第六条** 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的比例不得低于本单位在职职工总数的1.5%。具体比例由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规定。  　　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达不到其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比例的，应当缴纳保障金。  **第七条** 用人单位将残疾人录用为在编人员或依法与就业年龄段内的残疾人签订1年以上（含1年）劳动合同（服务协议），且实际支付的工资不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方可计入用人单位所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  　　用人单位安排1名持有《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证》（1至2级）或《中华人民共和国残疾军人证》（1至3级）的人员就业的，按照安排2名残疾人就业计算。  　　用人单位跨地区招用残疾人的，应当计入所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  **第八条** 保障金按上年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的差额人数和本单位在职职工年平均工资之积计算缴纳。计算公式如下：  　　保障金年缴纳额=（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人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安排残疾人就业比例-上年用人单位实际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年平均工资。  　　用人单位在职职工，是指用人单位在编人员或依法与用人单位签订1年以上（含1年）劳动合同（服务协议）的人员。季节性用工应当折算为年平均用工人数。以劳务派遣用工的，计入派遣单位在职职工人数。  　　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的差额人数，以公式计算结果为准，可以不是整数。  　　上年用人单位在职职工年平均工资，按用人单位上年在职职工工资总额除以用人单位在职职工人数计算。  **第九条** 保障金由用人单位所在地的地方税务局负责征收。没有分设地方税务局的地方，由国家税务局负责征收。  　　有关省、自治区、直辖市对保障金征收机关另有规定的，按其规定执行。  **第十条** 保障金一般按月缴纳。  　　用人单位应按规定时限向保障金征收机关申报缴纳保障金。在申报时，应提供本单位在职职工人数、实际安排残疾人就业人数、在职职工年平均工资等信息，并保证信息的真实性和完整性。  **第十一条** 保障金征收机关应当定期对用人单位进行检查。发现用人单位申报不实、少缴纳保障金的，征收机关应当催报并追缴保障金。  **第十二条** 残疾人就业服务机构应当配合保障金征收机关做好保障金征收工作。  　　用人单位应按规定时限如实向残疾人就业服务机构申报上年本单位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未在规定时限申报的，视为未安排残疾人就业。  　　残疾人就业服务机构进行审核后，确定用人单位实际安排的残疾人就业人数，并及时提供给保障金征收机关。  **第十三条** 保障金征收机关征收保障金时，应当向用人单位开具省级财政部门统一印制的票据或税收票证。  **第十四条** 保障金全额缴入地方国库。  　　地方各级人民政府之间保障金的分配比例，由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部门商残疾人联合会确定。  　　具体缴库办法按照省级财政部门的规定执行。  **第十五条** 保障金由税务机关负责征收的，应积极采取财税库银税收收入电子缴库横向联网方式征缴保障金。  **第十六条** 自工商登记注册之日起3年内，对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在职职工总数20人以下（含20人）的小微企业，免征保障金。  **第十七条** 用人单位遇不可抗力自然灾害或其他突发事件遭受重大直接经济损失，可以申请减免或者缓缴保障金。具体办法由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部门规定。  　　用人单位申请减免保障金的最高限额不得超过1年的保障金应缴额，申请缓缴保障金的最长期限不得超过6个月。  　　批准减免或者缓缴保障金的用人单位名单，应当每年公告一次。公告内容应当包括批准机关、批准文号、批准减免或缓缴保障金的主要理由等。  **第十八条** 保障金征收机关应当严格按规定的范围、标准和时限要求征收保障金，确保保障金及时、足额征缴到位。  **第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违反本办法规定，擅自减免或缓征保障金，不得自行改变保障金的征收对象、范围和标准。  **第二十条** 各地应当建立用人单位按比例安排残疾人就业及缴纳保障金公示制度。  　　残疾人联合会应当每年向社会公布本地区用人单位应安排残疾人就业人数、实际安排残疾人就业人数和未按规定安排残疾人就业人数。  　　保障金征收机关应当定期向社会公布本地区用人单位缴纳保障金情况。  **第三章 使用管理**  **第二十一条** 保障金纳入地方一般公共预算统筹安排，主要用于支持残疾人就业和保障残疾人生活。支持方向包括：  　　（一）残疾人职业培训、职业教育和职业康复支出。  　　（二）残疾人就业服务机构提供残疾人就业服务和组织职业技能竞赛（含展能活动）支出。补贴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所需设施设备购置、改造和支持性服务费用。补贴辅助性就业机构建设和运行费用。  　　（三）残疾人从事个体经营、自主创业、灵活就业的经营场所租赁、启动资金、设施设备购置补贴和小额贷款贴息。各种形式就业残疾人的社会保险缴费补贴和用人单位岗位补贴。扶持农村残疾人从事种植、养殖、手工业及其他形式生产劳动。  　　（四）奖励超比例安排残疾人就业的用人单位，以及为安排残疾人就业做出显著成绩的单位或个人。  　　（五）对从事公益性岗位就业、辅助性就业、灵活就业，收入达不到当地最低工资标准、生活确有困难的残疾人的救济补助。  　　（六）经地方人民政府及其财政部门批准用于促进残疾人就业和保障困难残疾人、重度残疾人生活等其他支出。  **第二十二条** 地方各级残疾人联合会所属残疾人就业服务机构的正常经费开支，由地方同级财政预算统筹安排。  **第二十三条** 各地要积极推行政府购买服务，按照政府采购法律制度规定选择符合要求的公办、民办等各类就业服务机构，承接残疾人职业培训、职业教育、职业康复、就业服务和就业援助等工作。  **第二十四条** 地方各级残疾人联合会、财政部门应当每年向社会公布保障金用于支持残疾人就业和保障残疾人生活支出情况，接受社会监督。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五条** 单位和个人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和《违反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政处分暂行规定》等国家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一）擅自减免保障金或者改变保障金征收范围、对象和标准的；  　　（二）隐瞒、坐支应当上缴的保障金的；  　　（三）滞留、截留、挪用应当上缴的保障金的；  　　（四）不按照规定的预算级次、预算科目将保障金缴入国库的；  　　（五）违反规定使用保障金的；  　　（六）其他违反国家财政收入管理规定的行为。  **第二十六条** 用人单位未按规定缴纳保障金的，按照《残疾人就业条例》的规定，由保障金征收机关提交财政部门，由财政部门予以警告，责令限期缴纳；逾期仍不缴纳的，除补缴欠缴数额外，还应当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5‰的滞纳金。滞纳金按照保障金入库预算级次缴入国库。  **第二十七条** 保障金征收、使用管理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在保障金征收和使用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五章 附 则**  **第二十八条** 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部门会同税务部门、残疾人联合会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并报财政部、国家税务总局、中国残疾人联合会备案。  **第二十九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税务总局、中国残疾人联合会负责解释。  **第三十条** 本办法自2015年10月1日起施行。《财政部关于发布＜残疾人就业保障金管理暂行规定＞的通知》（财综字〔1995〕5号）及其他与本办法不符的规定同时废止。 |